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의 료 급 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정신병원을 별도 의료기관의 종류로 신설하는 「의료법」 개정[법률 제17069호, 2020.3.4. 일부개정]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 하위법령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(안 별표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 신설)
- 나.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(안 별표1 제3호나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가목1)가), 2)가), 3)가), 5)나) 및 다)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.

별표 1의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. 가목1), 2), 3), 5)나) 및 다)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.

별표 1의 제3호나목 중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”을 삭제하고, “중합병원”을 “정신병원·중합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3호나목2) 중 “요양병원·중합병원”을 “요양병원·정신병원·중합병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(제13조 관련)	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(제13조 관련)
1. 1종수급권자에-----부담물 가.~아. (생략) <신설>	1. (현행과 같음) 가.~아. (현행과 같음) 자. 가목1)가), 2)가), 3)가), 5)나) 및 다)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 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.
2. 2종수급권자에-----부담물 가.~버. (생략) <신설>	2. (현행과 같음) 가.~버. (현행과 같음) 서. 가목1), 2), 3), 5)나) 및 다)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 에서 부담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-----부담한다. 가. (생략) 나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	3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

현행	개정안
다른 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 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.)·종합병원 및 -----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 1) (생략) 2) 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종합 병원 2인실 입원료에-----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.	다른 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.)·정신병원· 종합병원 및-----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 1) (현행과 같음) 2) 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정신 병원·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-----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-3092